

2017년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 채용 안내

5.15(월) ~ 5.29(월)

문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재개발부
Tel. 044-550-5544



1. 채용 분야·직급 및 인원

일반직	3급	1명	본부 및 도본부
	7급	1명	본부 및 도본부
방역직	7급 공무원	1명	경기도본부 (관할사무소)
	7급 공무원	5명	전북도본부 (관할사무소)
	7급 공무원	3명	전남도본부 (관할사무소)
	7급 공무원	1명	경북도본부 (관할사무소)
위생직	7급 공무원	4명	경기도본부 (관할사무소)
	7급 공무원	4명	충북도본부 (관할사무소)
	7급 공무원	3명	충남도본부 (관할사무소)
	7급 공무원	5명	전북도본부 (관할사무소)
	7급 공무원	3명	전남도본부 (관할사무소)
	7급 공무원	1명	경남도본부 (관할사무소)
검역직	6급 공무원	2명	본부 및 검역사무소
합계 34명			

※ 공무직은 '무기계약직'임

2. 응시자격

- **공통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보호)대상자는 채용 단계별 법률근거 하여 가산점을 부여(만점의 5~10%이내)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및 농어업인 자녀, 저소득층(자녀)은 서류전형에 한하여 만점의 5%를 득점에 가산
 - ※ 주1) 우대항목이 2개 이상 중복 시에는 1개 항목만 적용
 - 주2) 취업지원(보호)대상자와 타 우대항목이 중복될 경우 각 단계별로 가점이 되는 취업지원(보호)대상자를 우선적용
 - 주3) 우대항목은 본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4. 제출서류

- 지원서(소정양식) 1부. ※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 부착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17. 8월 졸업예정자 포함).
※ 졸업증명서 및 예정증명서 원본 제출
- 성적증명서 1부(증명서 원본).
-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부
- 자격증, 운전면허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각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및 국가보훈대상(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5. 전형일정

- 접수기간: 2015. 5. 15(월) ~ 2015. 5. 29(월) (15일간)
- 접수방법: 우편접수, 방문접수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재개발부 인사담당자 앞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아름동 239, 문의사항 044-550-5544)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18:00)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17. 6. 2(금) / 홈페이지에 게재
-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 2017. 6. 8(수) ~ 9(금)
※ 면접시험장: 우리본부 대회의실(3층)
- 신원조회요청: 2017. 6. 12(월)
- 최종합격자 발표: 2017. 6. 20(화) / 개별통보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예정일: 2017. 7. 1.
※ 본부의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방역직 임금피크 전환에 따른 대체인력(초임직급) 2명(전북1명·경북1명)운영 - 지역별 합격자 중 최하순위 자를 선정하며 '17. 10. 1 임용 예정
- 최종합격자 운영방법, 채용서류 반환, 기타사항 문의
Tel. 044-550-5544 / www.lhca.or.kr

2017년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 채용 안내

5.15(월) ~ 5.29(월)

문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재개발부
Tel. 044-550-5544



직종별 응시자격 요건 안내

구분		자격요건
일반직	3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축위생·방역 및 축산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석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학사학위 취득후 6년이상인 근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당해업무에 능통한 자 공무원 6급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산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과장급이상으로 재직한 자로서 당해기관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경력 및 기타자격으로 상기요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5급 이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가축방역·위생분야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공무원 8급이하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산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직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그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경력 및 기타자격으로 상기요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방역직 (7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를 6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위생직 (7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 식품학, 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검역직 (6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 검역업무(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 업무)가 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자